

1. 개정이유

주부와 술부가 일치하지 않은 조문 수정, 예비조사반 운영시 불필요한 제한 삭제 및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 보완을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본문에는 위촉과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서술부에는 위촉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임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(안 제5조제2항,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)
- 나. 예비조사반의 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하여 삭제(안 제5조제5항)
- 다. 예비조사반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 신설(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제5조제2항 중 "위촉장을 발급하고,"를 "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하고, 임명 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포함하여 5명 이내로"를 "포함하여"로, "구성하고, 위촉, 증표발급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를 수 있다"를 "구성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"위촉된"을 "임명 또는 위촉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해촉·사임, 또는 사고조사가 끝나면"을 "해촉, 임명취소, 사임 또는 임기 종료시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1항) 중 "조사완료"를 "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완료"로 한다.

① 예비조사반장은 예비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필요성 여부가 포함된 예비조사 보고서를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 중 "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

관한 규정」"을 "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"으로, "2021년 7월 1일"을 "2025년 7월 1일"로 하고, 같은 조에 부칙 제20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칙 <제2025-00호, 2025. 00. 00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 호

위 축 장

성 명 :

생년월일 :

귀하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2에
따른 소방청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(장)으로
위촉합니다.

(기간 : 20 . . . ~ 20 . . .)

20 년 월 일

소방청장

(○○소방본부장, ○○소방서장)

직 인

제 호

임명장

성명 :

생년월일 :

귀하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2에
따른 소방청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(장)으로
임명합니다.

(기간 : 20 . . . ~ 20 . . .)

20 년 월 일

소방청장

(○○소방본부장, ○○소방서장)

직인

사 진 (3 × 4)	° 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증 제 호 소속 : 직위 : 성명 : 위 사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(위원장, 원)임을 증명합니다. 20 년 월 일 소방청장 (○○소방본부장, ○○소방서장)
인	

210mm×297mm[백상지80g/㎡(재활용품)]

2. 사고 원인분석

가. 현장상황

나. 진술내용

피해자 []

목격자 []

참고인 []

기 타 ()

피해자 []

목격자 []

참고인 []

기 타 ()

피해자 []

목격자 []

참고인 []

기 타 ()

다. 사고원인

3. 조사 내용

가.

나.

4.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항

연 번	위반 내용	적용 법조항	대상자	비 고
			관계인 / 취급자 등	

5. 재발방지 대책

가.

나.

다. 제도개선 사항

6. 사고현장 조치내용(또는 계획)

7. 권고 및 향후 조치 사항

위와 같이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

(서명 또는 인)

소 방 청 장 (○ ○ 본 부 장 , ○ ○ 서 장) 귀 하

5. 검토 내용(검토 결과 등)

6. 기타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 반 운영) ① (생 략)	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 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 식의 <u>위촉장을 발급하고</u> , 위촉 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 <u>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</u> <u>급하고, 임명 또는</u> ----- -----.			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			
⑤ 제4항에 따른 조사반은 조사 반장을 <u>포함하여 5명 이내로</u>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<u>구성하고</u> , 위촉, 증 표발급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 규정을 따를 수 있다.	⑤ ----- ---- <u>포함하여</u> ----- ----- ----- <u>구성한다.</u>			
<신 설>	⑥ <u>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</u> <u>소방서장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</u> <u>을 위해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</u> <u>는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</u> <u>둘 수 있다.</u>			
제9조(위원 등의 증표) ① 소방청 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제5조제1항에 따라 <u>위촉된</u> 위원(위원장을 포함한다)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한다. 이 경우 관계공무원	제9조(위원 등의 증표) ① ----- ----- ----- <u>임명 또</u> <u>는 위촉된</u> ----- ----- -----.			

은 공무원증으로 증표를 대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받은 자는 해촉·사임, 또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3조(조사결과의 보고) <신설>

① 위원장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6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

-----.

② -----
--- 해촉, 임명취소, 사임 또는 임기 종료시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조사결과의 보고) ① 예비조사반장은 예비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필요성 여부가 포함된 예비조사 보고서를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-----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완료 -----

--.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16조(재검토기한) -----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-----

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---- 2025년 7월 1일-----

부칙 <제2025-00호, 2025.
00. 00.>